

『구미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8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놀이기구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, 예산지원 등 규정 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놀이기구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 규정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관리감독 및 기타사항 등 규정(안 제9조 ~ 안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제12조제1항(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)

제14조(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), 제15조(안전점검 실시)

-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

제2조(어린이놀이시설), 제11조(안전점검 실시)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엽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,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, 안전의무 이행,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8조에서는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,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,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